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7. 15.(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북FM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0-41-209)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북FM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북 FM방송국 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그리고 허가 유효기간은 개국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7월 31일에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충북 FM방송국 허가 신청을 한 바 있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북 FM방송국은 총 738.89점을 획득했습니다. 4쪽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국 운영, 시설 구축 등에 문제가 없으며, 충북 지역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성과 적절성도 인정됨, 다만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적정한 허가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난청 해소 방안 마련, 지역 일자리 확대,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방송법령 반복 위반 방지 계획 보완, 안정적 교통·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예비 방송장치 구축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함. 과기정통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방송국 신규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함. 다만, 혼신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 해소 노력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음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허가이므로 허가 유효기간을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나, 도로교통공단의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근거한 허가 유효기간 단축 요청을 고려하여 개국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11개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과의 일치를 위해 유효기간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방송 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난청 발생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실질적 난청 해소 계획을 마련하여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권고사항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적정한 허가절차를 거치고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 새로운 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에 대응하여 교통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2020년 7월 중에 교통충북 FM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제가 심사위원장이었는데 교통방송은 이것 외에도 방송국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교통방송이 특히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 상황뿐만 아니라 재난 방송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1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도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기준점수가 다 넘었고 또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감안해서 조건과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권고사항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허가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권고사항에 붙은 것은 이것이 원래는 방통위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방송국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예산 확보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가 나가기도 전에 예산이 확보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권고사항을 적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건축비, 부지 매입비 등등 294억 정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존경하는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심사결과와 또 사무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TBN 충북교통방송국에 대한 신규허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법인인 도로교통공단은 지역성 서비스를 제고하고 또 실질적 난청 해소 등 허가조건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개국 전까지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살펴보기 바랍니다. 표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표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사위원들께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사평가 점수가 738.89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신규허가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가운데 궁금한 것 2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지역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개국일 이전까지 제출토록 하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상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는 일단 방송구역이 방송 초기에는 너무 청주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또 많은 인구가 사는 충주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을 충원할 때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현지에서 충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또 난청 발생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파수 방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난청 해소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볼 때 난청 발생 예상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주파수 확보 방안이라는 것은 난청 해소를 위한 중계소 주파수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주파수는 새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현재 제기가 되었는데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난청 해소 지역은 일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괴산·음성·보은군은, 저희가 일부와 일원을 구분할 때 20% 이상 청취 가능하면 일부라고 하고, 50% 이상이면 일원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난청 해소 지역이 있고, 거기에 또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가청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충북 전체로 볼 때 비가청지역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면 중계소를 위한 주파수 확보도 별도로 해야 할 상황입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개국 전까지 필요한 사안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표철수 부위원장님과 또 심사위원님들,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가 조건에서 ①, ② 사항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방송 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을 허가조건 ①번 조항으로 삼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 교통방송에서 편법적인 유사 보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①번 방송 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꼭 이점을 지켜서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의 교통방송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송의 지역성 제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밀착형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거듭 지역방송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허가조건이 잘 준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사후 점검 등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TikTok Pte. Ltd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41-21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TikTok Pte. Ltd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TikTok Pte. Ltd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6.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틱톡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은 2019년 국정감사 시 인지한 틱톡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운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했고, 2020년 6월에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입니다. 틱톡 회사는 2017년 5월 31일부터 국내 이용자에게 틱톡 (TikTok) 앱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일반현황 및 매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틱톡 회사 전 세계 매출액은 2017년 5월 서비스 개시부터 발생했지만 국내 매출액의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광고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현황입니다. 틱톡 회사는 2017년 5월 31일부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 다음 <표>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1,000만 여건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입니다. 틱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가입 시 로그인 화면에 “가입하면, 다음에 동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약관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읽고 이해함 :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문구만 보이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틱톡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의 직접입력 또는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틱톡 회사는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틱톡 서비스에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틱톡 회사가 해당계정을 차단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단 내용은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틱톡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면서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령상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입니다. 틱톡 회사가 틱톡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지역에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였고, 2019년 11월 틱톡 회사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보관 및 운영하기 위해 미국, 싱가포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틱톡 회사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할 사항을 알리지 않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 제출의견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기존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신고·차단시스템 운영 외에 자체 모니터링·심사, “법정 생년월일”

입력절차 도입 등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향후에도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이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입니다. 과징금 부과사항입니다. 틱톡 회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므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매출액은 틱톡 회사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4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에 따라 '보통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판단 및 적용근거와 기준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하여 위반기간이 2년 초과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하여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공개·고지 위반 관련하여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하여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고발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와 고발기준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번 달 중으로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이행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틱톡 회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안건인데 이번에 사무처에서 확인해 본 결과, 틱톡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0건 이상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틱톡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마지막 의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보면 이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접속정보와 이용자 활동 정보, 기기정보까지 다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필수가입과 선택가입에 관련된 내용 구분은 현재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필수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이용자 활동정보까지도 필수항목으로 전부 다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용자의 관심사나 프로필 정보에 대한 것, 활동내역 같은 것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부분에 대해 필수와 선택은 사업자가 구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이용자 동의 만능주의라는 것으로 필수 동의가 안 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조항까지 모두 다 필수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활동정보까지 모두 다 필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한 대로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해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쉬운 것은 틱톡의 망법 위반 사실을 싱가포르나 미국에 있는 위탁사업자 서버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틱톡이 자체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우리가 판단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버 자료를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틱톡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이용자가 1,057만 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 직접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위반 규모가 더욱 많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규제 집행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도 해외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미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이 시정조치의 내용들이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피심인 틱톡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실에 대해 공개 및 고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모두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6,007건으로 나왔는데 그 이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최소 6,007건이기 때문에….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6,007건이 틱톡 회사 측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여러 가지 신고된 내용, 그리고 틱톡 회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심사한 것, 또 키워드로 검색하여 찾아낸 것 중에서 특히 만 14세 미만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러한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만 14세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계정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틱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앱입니다. 국제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작년 2월에 미연방무역위원회에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 측에 대해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올 5월에 네덜란드에서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틱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틱톡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인정보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향후 시정조치 이외에도 철저한 이행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ByteDance), 틱톡의 모회사지요.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틱톡 앱의 보안, 프라이버시 관련한 우려에 대해 바이트댄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아까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이용자 활동정보 가운데 필수로 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관심 없음' 그다음에 내가 받은 '좋아요', '공유', '팔로잉', '팔로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과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틱톡은 정보 해외 유출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2건 모두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여러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8분 폐회 】